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 보고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8 |
|----------|-----|

2022년 9월 21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26일, 박칠성 의원(찬성자: 39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2년 9월 21일 상정, 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칠성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“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”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4개 물재생센터(중랑, 난지, 서남, 탄천) 중 난지물재생센터가 현재 서울시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조례 적용의 불합치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 관내에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 (안 제15조)
-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 시 협의 주체를 안 제15조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함. (안 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## 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·관리하고 있는 물재생시설 중 난지물 재생센터가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,
-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)」 제15조에서 시장이 “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,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■ 개정안 검토

- 먼저, 안 제15조는 본문 중 시장이 “서울시에 소재한”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“조례 제2조1호<sup>1)</sup>에 따른”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물재생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15조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15조(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) 시장은 <u>서울시에 소재한</u> 물 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 | 제15조(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) ----- <u>제2조제1호에 따른</u>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
- 1)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“물재생시설”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시장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「하수도법」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.
  2. - 6. (생 략)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. 복합약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|
| 3.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|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       | 4. (현행과 같음) |

- 이는 서울시가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물재생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 가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난지물재 생센터 주민협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 조례상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음.

[표 2] 난지물재생센터 일반현황

(2018.12.31.)

| 구분   | 주요내용  |
|------|---|
| 위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처리장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(현천동)</li> <li>- 유입펌프장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12 (상암동 1536)</li> <li>- 상암오수펌프장 :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111</li> </ul>   |
| 부지면적 | - 937,928m <sup>2</sup>   |
| 처리구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수 : 1개시 7개구<br/>(용산, 은평, 서대문, 마포구 전 지역, 종로, 중구, 성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지역)</li> <li>- 정화조 : 9개구<br/>(종로, 중구, 용산, 서대문, 마포, 강남, 서초구 전 지역, 영등포구 일부지역)</li> <li>- 분뇨 : 6개구<br/>(종로, 용산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영등포)</li> </ul> |
| 처리방법 | - A2o   |
| 시설용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수 : 86만 m<sup>3</sup>/일</li> <li>- 정화조 : 4,500kl/일</li> </ul>   |
| 처리효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입수 : BOD=125.4mg/l, SS=84.5mg/l</li> <li>- 방류수 : BOD=6.8(10)mg/l, SS=3.1(10)mg/l</li> </ul>   |

- 다만, 조례 제15조에서 제19조에 규정된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9.11.11.일 개정·시행(서울특별시조례 제4886호)되었고,

-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가 2013.1.1.일에 구성(물재생시설과 -17112, 2012.12.14.)되어 2022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불일치 사항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한 채 난지물 재생센터 주민협의회가 구성·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살펴보면,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못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진 측면이 있는바,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.
- 참고로, 4개 물재생센터(중랑, 난지, 탄천, 서남) 주민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.

[표 3] 서울시 물재생센터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

| 구분 | 구성현황(명) |               | 예산지원 현황(천원) |        |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| 최초 구성시기 | 현황(2022.9.기준) | 2020년       | 2021년  | 2022년  |
| 중랑 | 2012.1월 | 10(전문가 2)     | 10,000      | 15,000 | 15,000 |
| 난지 | 2013.1월 | 10(전문가 2)     | 10,000      | 20,000 | 20,000 |
| 탄천 | 2012.1월 | 8             | 8,000       | 16,200 | 20,040 |
| 서남 | 2012.1월 | 8             | 8,000       | 16,200 | 20,040 |

- 다음으로, 안 제16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물재생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“구청장 및 구의회” 의장과 협의하였던 것을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해당 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” 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조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
[표 4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16조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주민협의회의 구성)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. | 제16조(주민협의회의 구성)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-----.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1.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</p> <p>2.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, 국·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(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)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</p> |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

- 다만, 안 제16조제1호에서도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‘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’를 규정하고 있는바, “구의회”를 “지방의회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[표 5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16조)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의 요지 :**

- 개정안 제16조제1호에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‘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’를 규정하고 있는바,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“구의회”를 “지방의회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**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**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<br>118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 안 년 월 일 : 2022년 9월 21일  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 제16조제1호에서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‘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’를 규정하고 있는바,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관할 구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고려하여 “구의회”를 “지방의회”로 수정하려는 것임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6조제1호에 “구의회가”를 “지방의회가”로 함. (안 제16조제1호)

## 3. 참고사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1호 중 “구의회가”를 “지방의회가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서울시에 소재한”을 “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구청장 및 구의회”를 “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구의회가”를 “지방의회가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15조(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) 시장은 <u>서울시에 소재한</u>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16조(주민협의회의 구성)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<u>구청장 및 구의회</u>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</li> </ol> | <p>제15조(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) ---<br/>----- <u>제2조제1호에 따른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br/>1. (현행과 같음)<br/><br/>2. (현행과 같음)<br/><br/>3. (현행과 같음)<br/><br/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주민협의회의 구성) -----<br/>----- <u>지방자치단체장</u> 및 <u>지방의회</u> -----<br/>-----<br/>--.<br/>1.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<br/>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<br/><u>구의회가</u> 추천한 주민대표</p> <p>2.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<br/>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<br/>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, 국<br/>· 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<br/>구원(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<br/>만 해당)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<br/>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<br/>는 전문가 2명</p> | <p>-----<br/>-----<br/><u>지방의회가</u> -----<br/>2. (현행과 같음)</p> |